



2024-07-04

(24-4899)

페이지: 1/3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일본

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칭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
2. 담당기관:

경제산업성(METI)

환경성(MOE)

통보에 관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이 위와 다른 경우, 해당 기관의 이름 및 주소(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이메일 및 가능한 경우 웹사이트 주소 포함)를 명시해야 한다:

3. 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], 제 5.6.2 조 [], 제 5.7.1 조 [], 제 3.2 조 [], 제 7.2 조 [], 기타:

4. 해당 제품(해당되는 경우 HS 또는 CCCN, 이와 다른 경우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아래에 열거된 특정 수은 사용 제품:

특정 수은 사용 제품	입력일
수은 함량이 < 1%인 아연 산화은 버튼 전지[1] 및 수은 함량이 < 2%인 아연 공기 버튼 전지	2026.1.1
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 mg 을 초과하는 ≤ 30 와트의 일반 조명용 안정기 내장형(CFL.i) 소형 형광램프	2026.1.1
바로 아래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길이의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(CCFL)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(EEFL) (a) 램프당 수은 함량이 3.5 mg 을 초과하는 짧은 길이(≤ 500 mm) (b) 램프당 수은 함량이 5 mg 을 초과하는 중간 길이(> 500 mm 및 ≤ 1 500 mm) (c) 램프당 수은 함량이 13 mg 을 초과하는 긴 길이(> 1500 mm)	2026.1.1

<p>다음과 같은 전기 및 전자 측정기기(적절한 무수은 대체 기기가 없는 대형 장비에 설치된 또는 고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는 제외함)</p> <p>(a) 용융 압력 변환기, 용융 압력 송신기 및 용융 압력 센서</p>	2026.1.1	
> 30 와트의 일반 조명용 소형 형광램프(CFL)	2027.1.1	
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 mg 을 초과하지 않는 ≤ 30 와트의 일반 조명용 안정기 비내장형(CFL.ni) 소형 형광램프	2027.1.1	
<p>일반 조명용 선형 형광램프(LFL):</p> <p>(a) 할로인산염 형광체 ≤ 40 와트, 램프당 수은 함량이 10 mg 을 초과하지 않음</p> <p>(b) 할로인산염 형광체 > 40 와트</p>	2027.1.1	
<p>일반 조명용 비선형 형광등(NFL)(예: U 자형 및 원형):</p> <p>(b) 할로인산염 형광체, 모든 와드량</p>	2027.1.1	
<p>일반 조명용 선형 형광램프(LFL):</p> <p>(a) 램프당 수은 함량이 5 mg 을 초과하지 않는 < 60 와트의 3 파장 형광체</p> <p>(b) 램프당 수은 함량이 5 mg 을 초과하지 않는 ≥ 60 와트의 3 파장 형광체</p> <p>(c) 램프당 수은 함량이 5 mg 을 초과하는 ≥ 60 와트의 3 파장 형광체</p>	2028.1.1	
<p>일반 조명용 비선형 형광등(NFL)(예: U 자형 및 원형):</p> <p>(a) 3 파장 형광체, 모든 와트량</p>	2028.1.1	

[1] "산화은 전지(수은 함량이 전체 중량의 1% 미만인 버튼형 전지에 한함)"는 이미 시행령에 명시된 특정 수은 사용 제품이다. (<https://www.japaneselawtranslation.go.jp/en/laws/view/4280>)

5. **통보된 문서의 제목, 페이지 수 및 언어:** "수은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" 개정 (2 페이지, 영어)
6. **내용:** 수은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의 제 2 조 제 1 항에 근거하여 상기 제품들은 특히 제조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특정 수은 사용 제품으로 지정한다. 다른 제품의 제조에 구성성분으로 사용하는 것도 규제된다.
7. **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** 수은으로부터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환경의 온전함을 유지하며 국제 협력을 통해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의 신뢰성 있고 원활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수은 사용 제품의 제조 및 다른 제품의 제조에 구성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.

8. 관련 문서:

- 수은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(2015년 6월 19일자 법률 제 42호)

<https://www.japaneselawtranslation.go.jp/en/laws/view/3232>

- 수은에 의한 환경 오염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

(2015년 11월 11일자 내각령 제 378호)

<https://www.japaneselawtranslation.go.jp/en/laws/view/4280>

9. 채택 예정일: 2024년 10월

시행 예정일: 2026-01-01, 2027-01-01 및 2028-01-01

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60일

11. 관련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X] 또는 다른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, 해당 주소,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:

국제무역과

경제국

외무성

주소: 2-2-1 Kasumigaseki, Chiyoda-ku

Tokyo 100-8919, Japan

전화: + (81) 3 5501 8344

팩스: + (81) 3 5501 8343

이메일: enquiry@mofa.go.jp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JPN/24_04309_00_e.pdf